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4일

중소기업청장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해외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받은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금의 종류 및 명칭을 현행화 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 2. 주요내용

가. 해외 벤처캐피탈 투자를 벤처기업 확인의 대상이 되는 투자로 인정함  
(안 제2조의3제2항)

나.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등이 가능한 기금의 종류 및 명칭을 현행화함(안 별표1)

### 3. 의견제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벤처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행정정보-법률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전화 : 042-481-4494, Fax : 042-472-3282)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준하는 외국투자회사로서 국제적 신인도가 높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  
하는 투자회사

별표 1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40호, 제42호, 제43호 및 제  
44호를 삭제한다.

29.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의3(벤처기업의 요건 등) ① (생략)</p> <p>②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 (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 관을 말한다.</p> <p>1. ~ 5. (생략)</p> <p>&lt;신설&gt;</p> <p>③ ~ ⑪ (생략)</p>	<p>제2조의3(벤처기업의 요건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중소기업창업 지원법</u>」 제 <u>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 업투자회사에 준하는 외국투 자회사로서 국제적 신인도가 높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 하는 투자회사</u></p> <p>③ ~ ⑪ (현행과 같음)</p>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연 락 처	(042) 481 - 4494